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41호 2023. 3. 14.(화)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3-22호 남해군관리계획(학교: 상주중학교, 도로: 소로2-117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1
남해군 고시 제2023-24호 남해읍(선소)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기본계획(재수립) 고시 ...	3
남해군 고시 제2023-25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6
남해군 고시 제2023-26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2월)	8
남해군 고시 제2023-27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고시	10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3-285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군도7호선 소량교 재가설공사」 ..	12
남해군 공고 제2023-300호 2023년 남해군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16
남해군 공고 제2023-301호 통행 제한(금지) 및 우회노선 지정(덕신소하천 정비공사) ..	19
남해군 공고 제2023-330호 남해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행정예고	21
남해군 공고 제2023-334호 남해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3
남해군 공고 제2023-337호 남해군관리계획(상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공람·공고 ·	28
남해군 공고 제2023-340호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6
남해군 공고 제2023-343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39
남해군 공고 제2023-353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대곡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 ..	41
남해군 공고 제2023-355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상가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 ..	44
남해군 공고 제2023-357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동천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 ·	48

회 략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조정실(860-3044, 행정 3044)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3-22호

남해군관리계획(학교:상주중학교,도로:소로2-117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남해군관리계획(학교, 도로)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우리 군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2월 28일

남 해 군 수

- 1. 남해군관리계획(학교, 도로) 결정(변경)조서 : 붙임 참조
- 2. 관계도면 : 실음생략[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413)에 비치]

[붙임1]

남해군관리계획(학교, 도로) 결정(변경)조서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1.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0	상주중학교	중학교	상주면 상주리 590-1	8,853	증)319	9,172	경고 제2008-156호 (2008.04.24.)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	상주중학교	○ 면적증가(증319㎡) - A = 8,853㎡ → 9,172㎡	○ 지적합병 결과를 반영하여 학교구역 변경

1.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17	8	국지 도로	111	상주면 상주리 576-8	상주면 상주리 588-3	일반도로	-	남해고 제2017-006호 (2017.01. 25.)	
변경	소로	2	117	8	국지 도로	111	상주면 상주리 576-8	상주면 상주리 588-3	일반도로	-	남해고 제2017-006호 (2017.01. 25.)	

□ 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117호선	소로2-117호선	○ 도로모퉁이변 변경	○ 학교구역 변경에 따른 도로모퉁이변 변경

남해군 고시 제2023-24호

남해읍(선소)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기본계획(재수립) 고시

남해읍(선소)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기본계획(재수립)을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남해읍(선소)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2. 사업 목적 : 농산어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하여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어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어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사회 유지를 목적으로 함.
3. 위 치 : 남해군 남해읍 일원(선소리, 입현리, 심천리)
4. 사업 기간 : 2018년 ~ 2023년(6년간)
5. 총 사업비 : 9,360백만원(국비6,552, 지방비2,808) *자부담 150별도
6. 사업 시행자 : 남해군수(위·수탁 : 한국어촌어항공단)

7. 사업 개요

- 기초생활기반확충
 - 보물섬광장 조성 (건축면적 A=253.62㎡, 주차장 52대 등)
 - 선소해맞이마당&해안테크로드 조성 (L = 500㎡, 해맞이마당 A= 370㎡ 등)
 - 남해 더 나눔 주차장 조성 (포켓주차장 조성 62대, A= 2,659.5㎡ 등)
- 지역소득증대
 - 커뮤니티센터 신축 (건축면적 A=281.52㎡, 연면적 A=494.65㎡ 등)
- 지역경관개선
 - 바다함께둘레길 조성 : 5개 구간 3,500m
- 지역역량강화
 -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경영지원 등

8. 시행계획 열람 장소 : 관련자료는 남해군청 경제과(지역개발팀, 055-860-3613)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조서 : 별첨

남해읍(선소)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편입토지 조서

구분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비고
	시군	읍면	리	본번	부번				
보물섬광장 조성									
1	남해	남해읍	선소리	207	-	전	4,256.8	4,256.8	
남해 더 나눔 주차장 조성									
2	남해	남해읍	심천리	45	4	답	577.5	577.5	
3	남해	남해읍	입현리	391	4	잡	765	765	
4	남해	남해읍	입현리	397	2	도	338	338	
5	남해	남해읍	입현리	391	5	잡	979	979	
커뮤니티센터 신축									
6	남해	남해읍	선소리	221	1	임	1,921	1,921	
바람의 길 조성									
7	남해	남해읍	선소리	31	13	제	11,723	8,807	
8	남해	남해읍	차산리	36	33	제	6,885.6	3,767	
9	남해	남해읍	차산리	36	18	구	11,036.3	1,199	
쇠섬정원 리모델링									
10	남해	남해읍	입현리	산121	-	임	1,884	1,884	
11	남해	남해읍	입현리	550	1	임	1,240	1,240	
12	남해	남해읍	입현리	388	3	제	1,816	1,816	
토촌마을 소리길 조성									
13	남해	남해읍	입현리	1624	12	도	173	173	
14	남해	남해읍	입현리	550	1	대	453	120	
보물섬광장 진입길 확폭									
15	남해	남해읍	선소리	196	48	임	1,390	12.2	
16	남해	남해읍	선소리	196	57	임	394.6	116.8	
17	남해	남해읍	선소리	196	15	임	2,280.9	52.1	
18	남해	남해읍	선소리	213	1	전	611.6	27	
19	남해	남해읍	선소리	196	26	도	411.1	390	
20	남해	남해읍	선소리	196	65	묘	52.7	19	
21	남해	남해읍	선소리	94	5	도	1,214.3	76	
22	남해	남해읍	선소리	218	2	도	84.1	65	
23	남해	남해읍	선소리	221	3	도	212	132	
				계	23필지		50,487.5	28,668.4	

남해군 고시 제2023-25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합니다.

2023년 3월 3일

남 해 군 수

1. 목적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험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해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하고자 함.

2.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대상

연번	시설명칭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사업량		정비 계획	비고
	구분	명칭				시작 지점	끝나는 지점	연장 (m)	폭 (m)		
1	세천	회룡중앙 4세천	남해군	서면	중현리	1292-2	1310-1	260	2.5	'23년 이후	서면세천 -0035

※ 사업시기, 사업예산, 사업내용은 국·도비 지원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사유 :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시설 지정

4.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일 : 2023. 3. 3.

5. 소규모 공공시설에서의 응급조치 등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에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재해 현장에 있는 자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 응급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 응급조치에 종사한 자에 대한 관리청의 치료와 보상에 있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5조를 준용한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055-860-32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고시 제2023-26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2월)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3일

남 해 군 수

1. 도로명주소 부여 : 22건
2. 고시내용 : 붙임참조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호적발생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노구리 842-3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2479번길 46-7	20230228	남서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7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1143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로560번길 23-26	20230227	상주로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6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대리 27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한재로 247-18	20230224	신두리이라는 고개의 동쪽인 동한재(동대)와 서쪽인 서한재(서대)를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음리 1721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2264번길 122	20230223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2,6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1384-1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1476	20230223	남해군의 중심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829-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창선동로 318-8	20230223	행정구역명을 이용. 오용에서 연극, 적량으로 연결되는 도로임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포상리 1048-2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서대로 3268	20230223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항리 1480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541-58	20230223	설천면 소재지를 지나는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선구리 1125-6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1146	20230223	남면의 중심도로임을 반영. 남해의 가장 남쪽에 있다 하여 신라 신문왕때부터 남면이라 불렀다 함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금송리 674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동부대로 1750-17	20230221	남해군의 동부대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동천리 996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동부대로 1254-5	20230221	남해군의 동부대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914-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1223-6	20230216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1281-1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 187	20230216	고려 충신왕때 개칭한 창선의 옛 지명에서 유래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울도리 20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1184번길 20-41	20230213	서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8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임현리 486-4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강진만로 55-7	20230210	남해본섬과 창선도 사이에 자리한 강진만과 접한 해안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722-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591번길 18-14	20230210	서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9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현리 315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현로 112	20230210	행정구역명을 이용. 예전에는 평고개라고도 하였음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21-2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로60번길 47-25	20230209	상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작장리 614-6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987	20230208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478-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19-9	20230206	남해읍 소재지의 중심도로로서 아름다운 남해를 나타내는 옛 지명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130-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1932번길 34-2	20230203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3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영지리 51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봉화로372번길 20-12	20230201	봉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7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남해군 고시 제2023-27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고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고시 합니다.

2023년 3월 6일

남 해 군 수

1. 저수지 명칭 : 작장저수지

2. 저수지 관리자

가. 관리자 : 남해군수

나. 주소 : 경남 남해군 망운로 9번길 12

3. 저수지의 위치 및 규모

시설명	위 치	시설 제원				지정 사유	관리자	비고
		저수량 (천 m ³)	제당 길이(m)	제당 높이(m)	수혜 면적(ha)			
작장	남해군 서면 작장리 산12-3	102	254	17.4	38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정	남해군수	

4. 지정사유 :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홍수 대응능력 부족 및 저수지 붕괴 등 재해로부터 생명·신체 및 농경지 등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함.

5. 재해위험저수지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각호의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시설물관리자와 협의하시기 바람.

6.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일 : 2023. 3. 6.

7. 기타문의 : 남해군청 관광경제국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 (055-860-3303)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3-285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 「군도7호선 소량교 재가설공사」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군도7호선 소량교 재가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실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7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 가. 사업명 : 군도7호선 소량교 재가설공사
- 나. 위치 :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일원
- 다. 사업규모 : L=76.0m, B=8.0~10.0m(교량부 L=16.0m, B=8.0m)
- 라. 시행자 : 남해군수

2. 토지출입내용

- 가. 출입사유 : 조사·설계, 지적분할측량, 감정평가 등
- 나. 출입기간 : 2023. 2. 27. ~ 사업종료시 까지
- 다. 출입토지 : “붙임” 토지조서 참조

3. 보상계획 및 열람

가. 토 지 :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양아리 외

나. 물 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 일체

※ 토지 등 세부내역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남해군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 ⇒ 고시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4.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3.2.27. ~ 2023.3.14.

- 열람 장소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 055-860-3314)

-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기간 내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 서면으로 제출,

※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5.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열람기간 만료 후 보상협의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6. 보상절차, 보상방법

- 보상방법 :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용지 등의 협의 취득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방법으로 전액현금 지급(단, 압류 및 근저당은 토지소유자가 해제 후 계약체결 원칙)

- 보상금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보상금 산정

① 평가기관 : 2인 감정평가업자 선정(추천시 3인)

② 산정금액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은행 계좌로 입금

보상계획 열람공고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 요청(보상금 개별 통지) ⇒ 협의(계약체결) ⇒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공탁(협의 불성립시) ⇒ 이의재결 또는 소송

-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

-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나. 보상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도로팀(☎055-860-33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 입 용 지 조 서

순 위	동 명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성 명	비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1	상주면 양아리	642	답	327	327	부산 사하구 당리동 331-47	박*수	
2	상주면 양아리	641-3	답	474	474	부산 사하구 당리동 331-47	박*수	
3	상주면 양아리	641-2	도	56	56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621	박*조	
4	상주면 양아리	1950	구	7,412	167	세종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국(농림축산식품부)	
5	상주면 양아리	1954	도	6,787	54	세종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국토교통부)	
6	상주면 양아리	743-3	답	20	20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872	김*완	
7	상주면 양아리	763	답	912	50	부산 영도구 청학동369 대유맨션501	김*문	
8	상주면 양아리	762-1	전	205	4		박*준	미등기(사정토지)
9	상주면 양아리	743-2	도	195	19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	
10	상주면 양아리	762-2	도	50	37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	
11	상주면 양아리	744-2	도	66	66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	
12	상주면 양아리	761-1	도	152	52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975	김*수	
소 계				16,656	1,502			

남해군 공고 제2023-300호

2023년 남해군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남해군 관내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2023년 「남해군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을 공고 하오니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2월 28일

남 해 군 수

1.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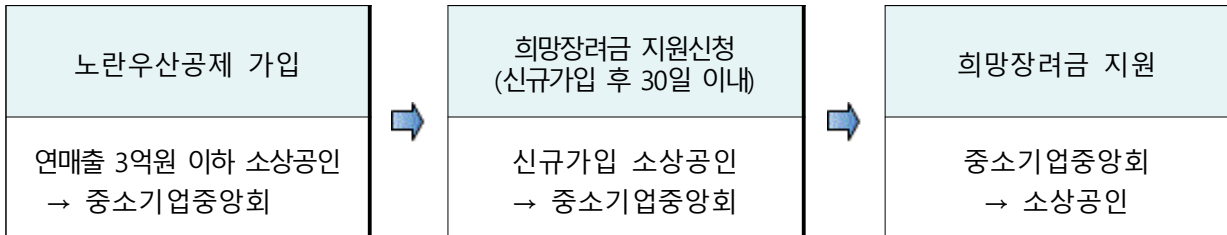
가. 신청기간 : 2023. 3. ~ 12.

나. 신청대상 : 남해군 관내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

다. 지원내용 : 희망장려금 월 2만원, 1년간(최대12회) 적립

※ 2회차 부금 납입 확인 후 적립되며, 부금 미납 및 사업장 이동·폐업 이후 지원 중단

라. 지원체계



마. 지원규모 : 소요예산(38,440천원) 범위 내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지원신청 및 문의처

가. 접수처

- 1) 온라인 : 노란우산홈페이지 (<http://www.8899.or.kr>)
- 2) 현 장 : 시중은행*,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 * 은행 : 우정사업본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 **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401호

나. 신청기한 :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구비서류 : 신청서, 매출액 증빙서류* 등

- * 매출액 증빙서류 : 직전연도(신규창업시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 ※ 신규 창업자의 경우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제출 가능

라. 문의처

- 1) 노란우산 제도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 055-281-2306)
- 2) 희망장려금 문의
 - 남해군청 경제과 지역경제팀 (☎ 055-860-3193)

3. 지원금 지급

가. 지급방법 :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마다 희망장려금 적립

- ※ 지원자격 확인 후 2회차 월 부금 납입 시부터 적립(1회차 부금에 대한 장려금은 2회차 부금납입 확인 후 2회차 장려금과 함께 소급적립)

나. 지급중단

- 1) 노란우산 공제부금이 미납될 경우(1년 내 미납 해소 시 지원)
- 2) 지원기간 중 폐업, 사망, 노령, 퇴임 등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지원기간 중 사업장 소재지가 타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 남해군 외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 월까지만 장려금 및 이자지급

노란우산공제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신청서

□ 지방자치단체(시행기관)명 : 경상남도(남해군)

본인은 노란우산공제 가입(희망)장려금 주요내용을 확인하고 귀회에 동 장려금 지원을 신청하며, 장려금을 지원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아래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계 약 자 명		생 년 월 일	
사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개시일	
연매출액	원	상시근로자 수	명

※ 사업장 이전 시 통지 의무사항 확인

장려금은 지원사업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원되므로 지원기간 중 해당 지자체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이 중단됨. 따라서, 장려금 수급자는 **사업장 이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장 이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바, 만약 동 기간 내 **사업장 이전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장 이전 전에 기 지원한 장려금을 포함한 장려금 전액이 지급되지 아니함을 확인함.**

2023년 월 일

위 본인 : _____ (인)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주요내용 >

- 지원대상 : 남해군 관내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23.1. 이후 신규 가입자)
- 신청방법 :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 제출
(단, 신규창업자의 경우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제출 가능)
- * 매출액 증빙서류 : 직전연도(신규창업시 당해연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 대체가능서류 :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면세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무등록 소상공인), 주택임대차계약서(신규 주택임대사업자)
- 지원방법 :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일정액을 장려금으로 적립
* 지원자격 확인 후 2회차 월부금납입 시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하는 경우 가입일로부터 1년 내 미납해소 시에만 지원
- 지원기간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
- 유의사항 : 적립된 장려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지급되고, 부금납입 2회 미만 임의해지시에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발생일 이전까지만 지원
 - ① 지원기간 중 사업장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가 아닌 타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 ② 지원기간 중 폐업.사망.퇴임 등 공제금지급(간주해약 포함)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자체별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은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남해군 공고 제2023-301호

**통행 제한(금지) 및 우회노선 지정
(덕신소하천 정비공사)**

「덕신소하천 정비공사」를 추진함에 따른 도로 이설공사 구간에서 발생 될 수 있는 교통 및 보행 안전사고를 방지코자 「도로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의 금지·제한 및 우회도로 구간을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23년 2월 28일

남 해 군 수

도로의 종류	남해군도	노선명	군도 2호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전면통제(모든차량 및 보행자)	구간	경남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67-3 ~ 1117-52번지
기간	2023년 3월 15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이유	도로공사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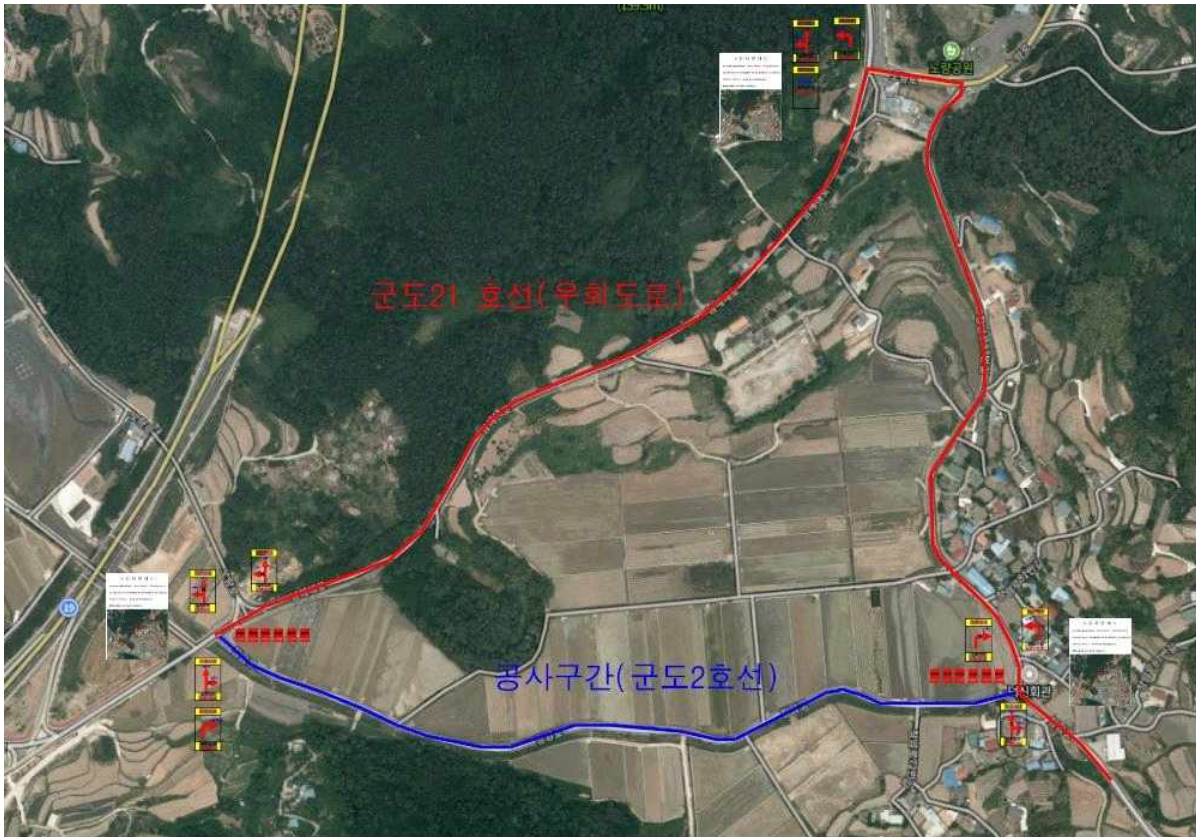
[붙임]

통행 제한(금지) 및 우회노선 지정

- 1. 도로의 종류 : 남해 군도 2호선
- 2. 제한 구간 : 경남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67-3 ~ 1117-52(연장: 약 0.80km)
- 3. 대상 차량 : 전면통제(모든차량 및 보행자)
- 4. 제한 기간 : 2023. 3. 15.(수) ~ 2023. 6. 30.(금)
- 5. 이 유 : 도로공사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 6. 우 회 노 선 : 설천면 덕신리 1380-2 ~ 1230-4 ~ 1117-1(연장: 약1.56km)

통행금지구간 : █

우회도로구간 : █



남해군 공고 제2023-330호

남해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행정예고

「하수도법」 제61조,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 내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 남해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내용에 의견이 있을 시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7일

남 해 군 수

1. 공고기간 : 2023. 3. 7. ~ 2023. 3. 27. (21일)
2. 공고방법 : 남해군 홈페이지, 공보, 읍면 게시판
3.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 내지 제17조
 - ※ 원인자부담금(원) = 1일 오수발생량(m³)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원/m³)
4. 부과대상
 -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여 오수가 1일 10m³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
 -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자
5. 대상지역 : 하수처리구역 내

6. 고시내역

-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2,320,000원/m³
-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2,945,000원/m³
- ※ 다만, 타행위로 인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단가 산정에 반영되지 못한 공공하수도의 설치비용은 원인자에게 원인자부담금 부과 외 추가적인 공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7. 시행일 : 2023년 3월 28일 예정(고시 시행일부터)

- 시행일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는 종전단가 적용

8. 의견제출

- 본 공고에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기한: 2023. 3. 26. 18:00까지 도착
- 제출방법: 서면, 전화, 우편, 팩스
- 가. 우 편: 경남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상하수도과
- 나. 팩 스: 055-860-3781
- 문의처: 남해군 상하수도과 하수도팀 (☎055-860-3331)
-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남해군 공고 제2023-334호

남해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 등으로 인한 주택 등에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시설 설치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군수 및 군민의 책무, 설치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 사항(안 제3조~제5조)
 - 다.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예산 편성 등 지원기준(안 제6조~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기관·단체는 2023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처 : 남해군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
 - 주소 : (우)52425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전화 : 055)860-3295, 팩스 055)860-3727
-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전화 055-860-32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남해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소유·점유·관리하는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등 풍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7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편성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9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단독주택: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준용) 침수 방지시설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3-337호

남해군관리계획(상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공람·공고

남해군관리계획(상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우리군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오니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0일

남 해 군 수

- 1. 공람기간 : 신문 게재 다음날부터 14일간
- 2. 관련도면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413)
- 3. 남해군관리계획(상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1>참조
- 4. 의견 제출 방법
 - 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군관리계획(상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구(변경없음)

1.1. 개발진흥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1	상신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창선면 상신리 1-1번지 (상신매립지)일원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	205,400	경상남도고시 제2007-487호 (2007.11.29)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1	상신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창선면 상신리 1-1번지일원	205,400	-	205,400	경상남도고시 제2007-487호 (2007.11.29)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3.1. 토지이용계획

구분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05,400	-	205,400	100.0	
체육시설 용지	체육시설소계	55,743	증)10,797	66,540	32.4	
	체육시설	35,652	증)8,480	44,132	21.5	
	승마장	11,762	감)600	11,162	5.4	
	주차장	3,067	감)287	2,780	1.4	
	조경·완충녹지	5,262	증)3,204	8,466	4.1	
관광휴양 시설용지	관광휴양소계	8,355	-	8,355	4.1	
	간이역	4,210	-	4,210	2.1	
	보물섬레일파크	3,100	-	3,100	1.5	
	광장 및 근린생활시설	1,045	-	1,045	0.5	
공공시설 용지	공공시설소계	14,140	감)5,230	8,910	4.3	
	주차장	7,119	감)5,230	1,889	0.9	
	도로	7,021	-	7,021	3.4	
녹지용지	녹지소계	127,162	감)5,567	121,595	59.2	
	녹지(유수지)	89,679	-	89,679	43.7	
	조경·완충녹지	10,667	감)5,567	5,100	2.5	
	공원	26,816	-	26,816	13.0	

3.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3.2.1.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374	상신리 1-3 답	상죽리 10-9답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07-487호 (2007.11.29)	단지내 도로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36	중로3-1	상신리 1-7	일반 도로	-	남해군고시 제2021-9호 (2021.1.12)	단지내 도로
기정	소로	3	51	6.5	국지 도로	1,897	상신리 353	오용리 1243-4	일반 도로	-	남해군고시 제2021-9호 (2021.1.12)	구역내 L=420

3.2.2.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주차장	창선면 상죽리 10-9답 일원	3,067	감)287	2,780	경상남도고시 제2007-487호 (2007.11.29)	
변경	2	주차장	창선면 상신리 10-27답 일원	5,230	감)5,230	-	경상남도고시 제2007-487호 (2007.11.29)	
기정	3	주차장	창선면 상신리 1-7답 일원	1,889	-	1,889	경상남도고시 제2007-487호 (2007.11.29)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차장1	○ 면적변경 (A=3,067㎡→2,780㎡)	○ 현황여건을 반영한 주차장 면적변경
2	주차장2	○ 폐지(A=5,230㎡)	○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주차장 폐지

3.2.3.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동대만 생태공원	문화 공원	창선면 상신리 1-1번지 일원	26,816	-	26,816	남해군고시 제2021-9호 (2021.1.12)	

3.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위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05,400	-	205,400			205,400	-	205,400	
-	I	55,743	증)10,797	66,540	I-1	창선면 상죽리 10-9번지 일원	35,652	증)8,480	44,132	체육시설
					I-2	창선면 상죽리 10-3번지 일원	11,762	감)600	11,162	체육시설
					I-3	창선면 상죽리 10-9번지 일원	3,067	감)287	2,780	체육시설
					I-4	창선면 상죽리 10-15번지 일원	5,262	증)3,204	8,466	체육시설
-	II	8,355	-	8,355	II-1	창선면 상신리 2-1번지 일원	4,210	-	4,210	관광 휴양시설
					II-2	창선면 상신리 1-7번지 일원	3,100	-	3,100	관광 휴양시설
					II-3	창선면 상신리 1-7번지 일원	1,045	-	1,045	관광 휴양시설
-	III	14,140	감)5,230	8,910	III-1	창선면 상죽리 10-3번지 일원	4,490	-	4,490	공공시설
					III-2	창선면 상신리 10-27번지 일원	5,230	감)5,230	-	공공시설
					III-3	창선면 상신리 1-23번지 일원	1,889	-	1,889	공공시설
					III-4	창선면 상신리 1-23번지 일원	297	-	297	공공시설
					III-5	창선면 상죽리 10-1번지 일원	2,234	-	2,234	공공시설
-	IV	127,162	감)5,567	121,595	IV-1	창선면 상죽리 10-2번지 일원	89,679	-	89,679	녹지
					IV-2	창선면 상신리 5-4번지 일원	5,567	감)5,567	-	녹지
					IV-3	창선면 상죽리 10-27번지 일원	5,100	-	5,100	녹지
					IV-4	창선면 상신리 1-1번지 일원	26,816	-	26,816	녹지

3.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체육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	I-1	용도	지정용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이하		
		용 적 륜	100%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I-2	용도	지정용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승마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이하		
	용 적 륜		100%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I-3		용도	지정용도	주차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용 적 륜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I-4	용도	지정용도	녹지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용 적 륜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 관광휴양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I	II-1	용도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 제15호, 제27호 규정에 따른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륜	120%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II-2	용도	지정용도	보물섬레일파크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륜	120%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II-3	용도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 제27호 규정에 따른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관광휴게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륜	120%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 공공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III	III-1 III-4 III-5	III-1 III-4 III-5	용도	지정용도	도로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용 적 륜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III-2 III-3	III-3	용도	지정용도	주차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용 적 륜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 녹지용지(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IV	IV-1 IV-2 IV-3	IV-1 IV-3	용도	지정용도	녹지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용 적 륜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IV-4	IV-4	용도	지정용도	공원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용 적 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높 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4.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26,816	100.0	
도로 및 광장	6,216	23.2	
조경시설	399	1.5	
휴양시설	1,888	7.0	
유희시설	966	3.6	
교양시설	1,011	3.8	
편익시설	943	3.5	
공원관리시설	75	0.3	
녹지 및 기타	15,318	57.1	조경·완충녹지

☑ 시설별 조서

구분	시설명	기호	부지면적(㎡)	규모/수량	비고
총계			26,816		
시설면적			11,498		
도로/광장	소계		6,216		
	도로		4,160		
	광장	가-1	453		
		가-2	473		
		가-3	426		
		가-4	425		
조경시설	소계		399		
	습지탐방로	나-1	216		
		나-2	183		
	꽃잎트렐리스	①		1	
	꽃잎조형물	②		6	
휴양시설	보행교	③		1	
	테크탐방로	④		1	
	소계		1,888		
	잔디광장	다-1	1,260		
	휴게쉼터	다-2	339		
	테크쉼터	다-3	289		
	퍼콜라	⑤		7	
유희시설	막구조퍼콜라	⑥		7	
	휴게트렐리스	⑦		1	
	소계		966		
	테마놀이터	라	966		
교양시설	그물놀이대	⑧		1	
	소계		1,011		
	테마정원	마-1	563		
편익시설		마-2	290		
		마-3	158		
	소계		943		
공원관리시설	지역특산물장터	바-1	750		
	먹거리쉼터	바-2	193		
녹지/기타	소계		75		
	관리사무소	사-1	60		대표소 포함
		사-2	15		
	소계		15,318		
	녹지		15,318		

남해군 공고 제2023-340호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7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2. 개정이유 : 기금의 건전화 및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하고 일반 회계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기 위해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기금과 관련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군민”을 각각 “남해군민”으로 수정
 - 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심의기능 추가(안 제6조제5호)
 - 다.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의 해촉 (안 제8조의2) 신설
 - 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추진 사업 구체적 명시(안 제13조제2항)
 - 마. 제16조 ~ 제21조까지 양성평등기금 관련 조항 삭제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3년 3월 27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남해군수(주민행복과 여성보육팀)

- 1). 주 소 : ☎52419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종합사회복지관 주민행복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847, 팩스 055-860-3891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여성보육팀(전화 055-860-38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군민” 을 각각 “남해군민” 으로 한다.

제6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양성평등정책사업과 관련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군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양성평등 촉진 사업
- 3.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4. 양성평등 정책의 연구·개발 지원
- 5.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 6.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권익증진, 발전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3- 343 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남해군 공인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 및 제11조(공인의 폐기)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 년 3월 8일

남 해 군 수

1. 사용 및 폐기 개시일 : 2023. 3. 6.

2. 사유

-폐기 및 등록 :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변경 및 종료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을 폐기하고 재등록

3. 전자이미지 공인명·인영

가. 등록

공인명	등록시스템	구분	인영	사용부서
남해군수인 (전자이미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록		재무과
남해군수인 (전자이미지)	e하늘장사시 스템	등록		복지정책과

나. 폐기

공인명	폐기시스템 (사용하지 않음)	구분	인영	사용부서
남해군수인 (전자이미지)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폐기		기획조정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남해군분임세입징수관 (전자이미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폐기		도시건축과
양곡관리특별회계경상남도남해군분임세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폐기		농업기술과

끝.

남해군 공고 제2023-353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

「대곡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대곡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실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8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 가. 사업명 : 대곡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
- 나. 위치 :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일원
- 다. 사업규모 : 급경사지 정비(L = 130m, B = 8.5m)
- 라. 시행자 : 남해군수

2. 토지출입내용

- 가. 출입사유 : 조사·설계, 지적분할측량, 감정평가 등
- 나. 출입기간 : 2023. 3. 8. ~ 사업종료시 까지
- 다. 출입토지 : “붙임” 토지조서 참조

3. 보상계획 및 열람

가. 토 지 :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외

나. 물 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 일체

※ 토지 등 세부내역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남해군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 ⇒ 고시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3.3.8. ~ 2023.3.23.

나. 열람 장소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 055-860-3314)

다.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기간 내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 서면으로 제출

※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5.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열람기간 만료 후 보상협의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6. 보상절차, 보상방법

가. 보상방법 :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용지 등의 협의 취득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방법으로 전액현금 지급(단, 압류 및 근저당은 토지소유자가 해제 후 계약체결 원칙)

나. 보상금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보상금 산정

① 평가기관 : 2인 감정평가업자 선정(추천시 3인)

② 산정금액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다.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은행 계좌로 입금

보상계획 열람공고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 요청(보상금 개별 통지) ⇒ 협의(계약체결) ⇒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공탁(협의 불성립시) ⇒ 이의재결 또는 소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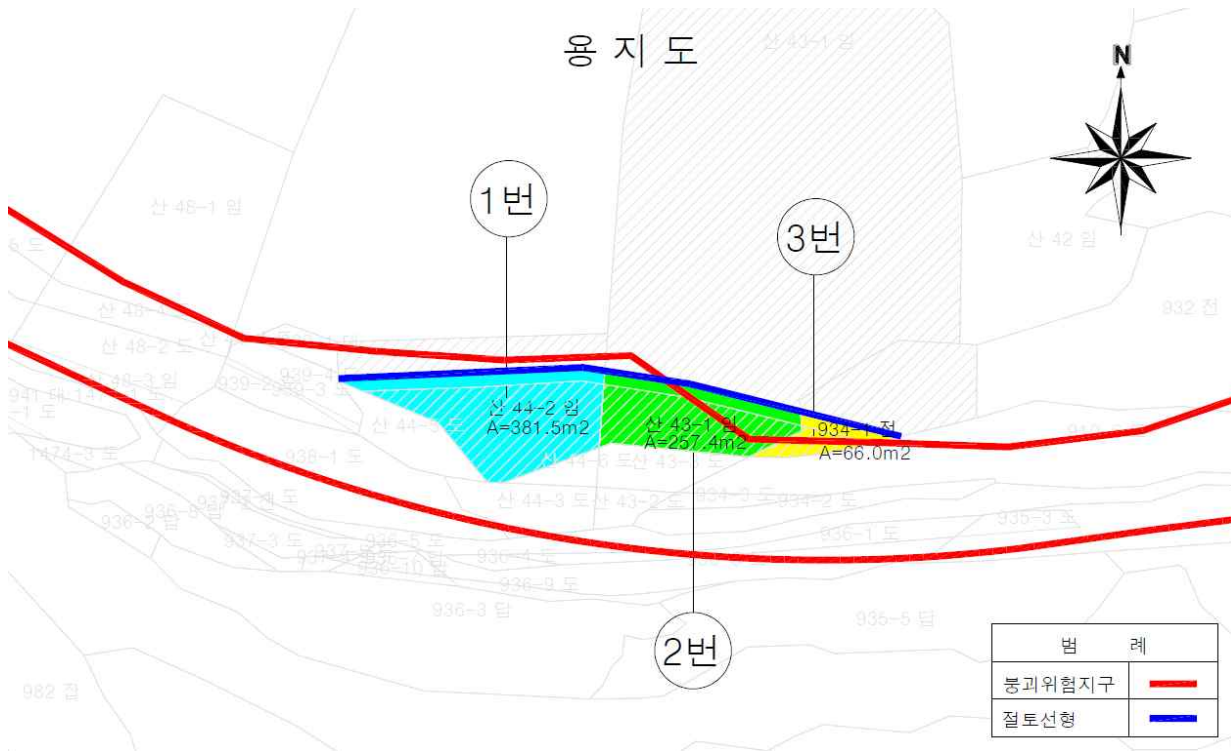
라.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

마.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나. 보상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도로팀(☎055-860-33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44-2	산	500	381.5	이0철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3051-5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43-1	산	4131	257.4	이0구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1035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934-1	전	323	66.0	이0구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1035	

남해군 공고 제2023-355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

「상가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상가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실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8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 가. 사업명 : 상가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
- 나. 위치 : 남해군 남면 상가리 산 108-2번지 일원
- 다. 사업규모 : L=1.142m, (급경사지 정비 L=300m)
- 라. 시행자 : 남해군수

2. 토지출입내용

- 가. 출입사유 : 조사·설계, 지적분할측량, 감정평가 등
- 나. 출입기간 : 2023. 3. 8. ~ 사업종료시 까지
- 다. 출입토지 : “붙임” 토지조서 참조

3. 보상계획 및 열람

가. 토 지 : 남해군 남면 상가리 산 108-2번지 일원

나. 물 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 일체

※ 토지 등 세부내역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남해군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 ⇒ 고시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3.3.8. ~ 2023.3.23.

나. 열람 장소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 055-860-3314)

다.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기간 내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 서면으로 제출

※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5.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열람기간 만료 후 보상협의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6. 보상절차, 보상방법

가. 보상방법 :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용지 등의 협의 취득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방법으로 전액현금 지급(단, 압류 및 근저당은 토지소유자가 해제 후 계약체결 원칙)

나. 보상금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보상금 산정

① 평가기관 : 2인 감정평가업자 선정(추천시 3인)

② 산정금액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다.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은행 계좌로 입금

보상계획 열람공고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 요청(보상금 개별 통지) ⇒ 협의(계약체결) ⇒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공탁(협의 불성립시) ⇒ 이의재결 또는 소송

라.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

마.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름.

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나. 보상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도로팀(☎055-860-33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입용지조사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편입)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 계 인			비 고	
	군	면					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의 종류, 내용
1	남해	남면	상가	산 108-2	도	4,993	114	국		남해군			
2	남해	남면	상가	산 92-2	도	4,022	330	국		남해군			
3	남해	남면	상가	산 92-9	임	477	35	국		남해군			
4	남해	남면	상가	1295	도	418	101	국		남해군			
5	남해	남면	상가	산 92-1	임	5,709	14	김0영		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478-5			
6	남해	남면	상가	산 92-5	도	80	43	국		남해군			
7	남해	남면	상가	산 91	임	1,983	37	김0기		경남 남해군 서면 대정리			
8	남해	남면	대정	산 161-2	임	3,731	63	김0덕		경남 남해군 서면 대정리 168			
9	남해	남면	대정	산 160-6	도	2,051	498	국		남해군			
10	남해	남면	대정	산 170-5	도	280	28	국		남해군			
11	남해	남면	대정	산 160-2	도	2,876	160	국		국토교통부			
12	남해	남면	대정	산 162-5	임	1,272	986	국		남해군			
13	남해	남면	대정	산 162-3	임	5,573	178	여0두		부산시 남구 문현동 351-7 세영맨션 3-402			
14	남해	남면	대정	산 160-3	임	6,905	352	여0두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동 155-15			
15	남해	남면	대정	산 160-8	임	1,285	1,096	국		남해군			
16	남해	남면	대정	산 159-4	도	1,871	19	국		남해군			
계						43,526	4,054					0	

남해군 공고 제2023-357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

「동천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동천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실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9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 가. 사 업 명 : 동천3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
- 나. 위 치 :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190-3 일원
- 다. 사업규모 : L=2,200m, (급경사지 정비 L=600m)
- 라. 시 행 자 : 남해군수

2. 토지출입내용

- 가. 출입사유 : 조사·설계, 지적분할측량, 감정평가 등
- 나. 출입기간 : 2023. 3. 9. ~ 사업종료시 까지
- 다. 출입토지 : “붙임” 토지조서 참조

3. 보상계획 및 열람

가. 토 지 : 남해군 남면 상가리 산 190-3번지 일원

나. 물 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 일체

※ 토지 등 세부내역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남해군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 ⇒ 고시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3.3.9. ~ 2023.3.23.

나. 열람 장소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 055-860-3314)

다.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기간 내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 서면으로 제출

※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5.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열람기간 만료 후 보상협의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6. 보상절차, 보상방법

가. 보상방법 :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용지 등의 협의 취득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방법으로 전액현금 지급(단, 압류 및 근저당은 토지소유자가 해제 후 계약체결 원칙)

나. 보상금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보상금 산정

① 평가기관 : 2인 감정평가업자 선정(추천시 3인)

② 산정금액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다.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은행 계좌로 입금

보상계획 열람공고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 요청(보상금 개별 통지) ⇒ 협의(계약체결) ⇒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공탁(협의 불성립시) ⇒ 이의재결 또는 소송

라.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

마.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름.

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나. 보상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도로팀(☎055-860-33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 지 조 서(전체)

구분	주소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성명	비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190-1	임	6,248	169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07,4동 4306호	강0원	보상
2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190-3	도	299	258		남해군	
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187-1	도	148	49		국토교통부	
4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189-1	도	1,214	183	삼동면 동천리 351	박0천	
5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196-1	임	16,507	259	서울 노원구 상계동 143-1	강0철	보상
6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196-6	도	2,305	269		남해군	
7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196-10	도	626	319		남해군	
8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196-11	도	115	21		남해군	
9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196-7	도	1,469	41	삼동면 동천리 312	박0호	
10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196-8	도	118	57	삼동면 동천리 312	박0호	
1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291-5	도	77	12		남해군	
12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293-9	도	28	28	경상북도 상주시 성동2길 45-16 (성동동)	김0래	
1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293-4	답	43	4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양화길로 132	김0모	보상
14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295-2	도	79	1	315	김0성	
15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293-8	도	1	1	경상북도 상주시 성동2길 45-16 (성동동)	김0래	
16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293-7	도	22	22		남해군	
17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293-2	도	96	15		남해군	
18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303-5	도	198	130		남해군	
19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303-10	도	211	120	삼동면 동천리 266	빈0오외5인	보상
20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303-8	도	86	86	삼동면 동천리 266	빈0오외5인	보상
2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307-7	도	2,281	459		남해군	
22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307-14	도	72	72	삼동면 동천리 330	문0암	보상
2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307-9	임	8,511	777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10번길 13, 20동 302호 (논현동, 대양빌라)	김0운	보상
24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307-12	도	790	790		남해군	
25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291-2	도	198	38	삼동면 동천리37	공0순	
26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291-4	도	142	104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68길 108,101동 202호(등촌동,동성아파트)	정0희	보상
27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291-6	도	228	194		남해군	
28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291-1	임	23,443	4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68길 108,101동 202호(등촌동,동성아파트)	정0희	보상
29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295-3	도	298	81		남해군	
합계				65,853	4,998			